법으로 들여다보는

학교폭력

이창호 / 노성덕 / 이소엽 / 손재환 / 김상수 / 주지선 / 조은희 / 조수연

한국청소년상담원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법으로 들여다보는 학교폭력 : 학부모개입 지침서 10

인　　쇄 : 2011년　12월
발　　행 : 2011년　12월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132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생용사촌인쇄정보(주)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발간사

근래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면면이 다양해지고 심각성 또한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기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담 경향들을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가족 문제, 성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화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지식들에 대한 공유가 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상담원에서는 그동안 7종의 학부모개입지침서와 6종의 청소년 자기성장 지침서를 발간하고, 인터넷게임중독프로그램, 자살예방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 등의 전문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더해가는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2011년에는 '**손에 잡히는 성(부모도 모르는 자녀의 성)**', 'SOS 우리 아이 인터넷중독 도와주세요', '**법으로 들여다보는 학교폭력**', '**우울청소년을 위한 First Aid**'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침서에는 문제 영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응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들, 다양한 관련 정보들, 기관들에 대한 소개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챙기시고 지도하는데 도움 받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 지침서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문제영역별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이 지침서를 제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쏟아주신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직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침서가 차가운 토지에 꽃을 피우듯이 청소년들의 어려움으로 힘에 겨운 학부모님들과 청소년 지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고민에 동참하고 발전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12월에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구 본 용**

머리말

학교폭력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학교폭력이 생각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의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학생과 그 부모들이 경험했을 고통과 스트레스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가장 애를 태우는 대상은 부모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학부모가 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여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에 초점을 두어 조그만 책자를 기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이 학교폭력의 유형과 원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학부모가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찾고자 할 때 마땅한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매뉴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법률적 처리 과정에 대해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장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의 이해를 돕고자 법률명칭, 목적 및 특징,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을 위한 학교조직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부모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형태으로 '학교폭력 관련법의 적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신고 및 처벌 근거, 조치절차, 신고할 수 있는 곳, 법적 처리절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관한 법률적 이해,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본 매뉴얼이 부모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1. 12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폭력 및 또래관계 전문가 모임 일동

Contents

Ⅰ. 학교폭력 관련법의 이해

1. 학교폭력은 어떤 법에서 다루고 있나요? ····· 2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2
   - 가. 법률의 목적 ····· 2
   - 나. 법률의 특징 ····· 3

3. '학교폭력'이란 어떻게 정의되나요? ····· 3

4. 학교폭력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책무가 있는 것인가요? ····· 4

5.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학교에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 있나요? ····· 7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법률 제12조) ····· 7
   - 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법률 제13조) ····· 7
   - 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법률 제14조) ····· 9

Ⅱ. 학교폭력 관련 법의 적용

1. 학교폭력의 신고 및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 12

2.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철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2

3.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 14

4. 학교폭력의 법적 처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5

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이해 ····· 16
   -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나요? ····· 16
   - 나. 학교폭력 사건 이후 가해학생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치되어지나요? ····· 17
   - 다. 가해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17
   - 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요? ····· 18
   - 마. 소년법상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19

6.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이해 ····· 19
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9
나.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 혹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 21

7.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21
가. 심리·정서적 상담 ····· 21
나. 법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22

〈부록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 2011.11.20] [법률 제10642호, 2011. 5.19, 일부개정] ··· 23

참고문헌 ····· 33
〈참고사이트〉 ····· 33

Ⅰ. 학교폭력 관련법의 이해

Ⅰ. 학교폭력 관련법의 이해

1. 학교폭력은 어떤 법에서 다루고 있나요?

학교폭력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2004년 1월 29일에 처음 제정되어 법률 제 7119로 공포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행 법률은 2011년 5월 19일에 개정된 법률 제 10642호이며, 2011년 11월 20일 이후 시행,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소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 법률의 목적

한 마디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가해학생 처벌보다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양측 모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법률의 특징

이 법률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학생의 신분을 가진 자(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 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이 법률은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학생 간 발생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에는 학교폭력 신고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용린 외, 2008).

3. '학교폭력'이란 어떻게 정의되나요?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 무단으로 들어온 성인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법률 제3조 2항).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법에서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법률 제3조)

4. 학교폭력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책무가 있는 것인가요?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란 행정부를 위시로 한 정부부처를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란 광역도·시청이나 시·군·구청을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률 제4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법률 제6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법률 제7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책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교육청 교육감의 역할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지역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시·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②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③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④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⑤ 판사·검사·변호사, ⑥「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⑦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⑧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⑨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법률 제9조)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법률 제10조)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의 임무 (법률 제11조)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기획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학교에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 있나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보고받았거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됩니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법률 제13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법에는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하는 법안은 최근에 개정되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람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학교의 교장이 맡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원들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원 (위원장 : 해당 학교장)**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없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 후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위의 소집 요건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 절차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3급 교재 '청소년 발달문제' p.106)

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법률 제14조)

학교폭력은 모든 교사가 주목하고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을 전담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는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상담교사란?

① 대학·산업대학의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였거나,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교사로서, 학생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전문가입니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에는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고,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Ⅱ. 학교폭력 관련법의 적용

Ⅱ. 학교폭력 관련 법의 적용

1. 학교폭력의 신고 및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폭력에 대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적용됩니다.

2.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철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래 [그림 2]와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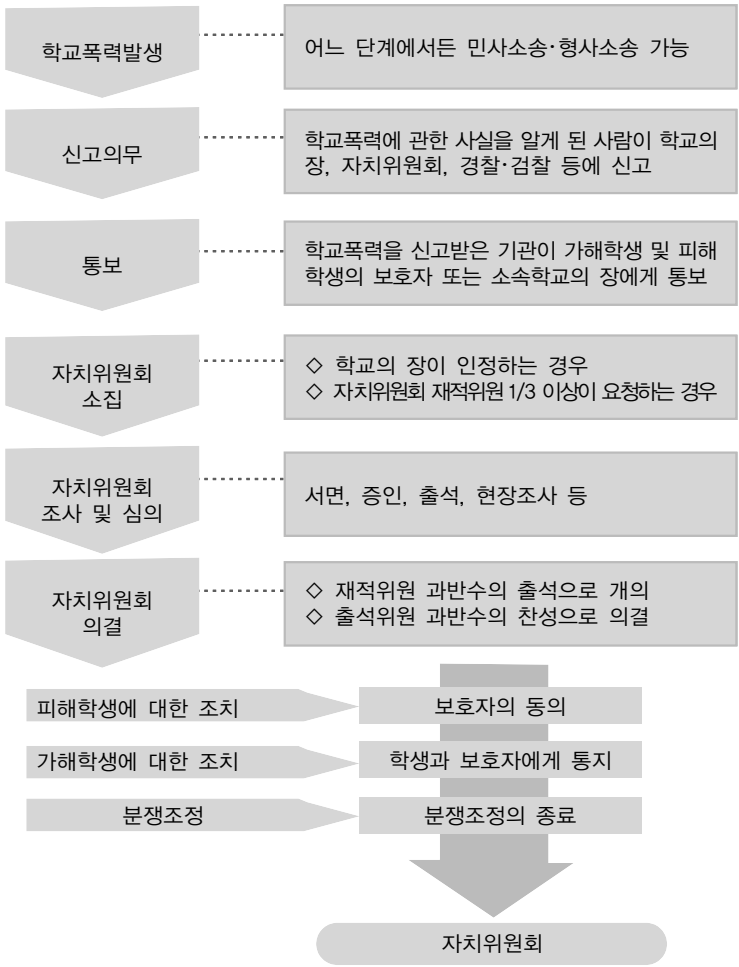

[그림 2] 학교폭력 발생시 해결과정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학교폭력' p.95

3.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해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긴급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전화 및 온라인 신고 방법

☎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요금 무료)

□ 문자신고 : #0117(요금 무료)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 :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로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1:1채팅 및 신고 가능

□ 모바일웹/앱 신고 : m.safe182.go.kr 접속 또는 모바일앱 실행→모바일웹에서 〈학교여성폭력 신고〉메뉴 터치, 앱에서 〈도와주세요118〉 터치→각 신고양식 화면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

□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서 작성

- 주소 : http://cyber112.police.go.kr/sub.jsp?urlNum=notify8

4. 학교폭력의 법적 처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적인 조치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직은 청소년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사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 오고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이나 법률 자문 등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의 절차]

① 경찰신고 → ② 경찰수사 → ③ 검찰송치 → ④ 기소유예 또는 법원 기소 → ⑤ 법원 송치 → ⑥ 재판 진행 → ⑦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판결

[민사재판의 절차]

① 민사 소송 제기 → ② 변호사 선임 → ③ 재판 진행 → ④ 판결

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이해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률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학교폭력 사건 이후 가해학생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치되어지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1. 자치위원회의 요청 (적정한 절차 보장)
↓
2. 학교의 장의 조치 (보호자의 동의 불요)
↓
3.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학교폭력' p.100)

다. 가해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원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 유인죄, 명예훼손죄·모욕죄 및 공갈(恐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는 폭행죄, 협박죄, 강요 및 공갈의 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하는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형법」 제9조), 다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형별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마. 소년법상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은 만10세부터 만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	처리
만 10세 미만	보호처분 및 형벌 대상 아님	일체의 처벌불가 (형사처벌, 보안처분)
만 10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만 14세~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 범죄를 행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형사처벌, 보호처분 가능
기타	우범소년 :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범죄 우려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 우범소년이란 :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음주 소란, 가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경우는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범 소년으로 규율

6.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이해

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학교폭력' p.97)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장애학생의 보호(법률 제16조의2)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나.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 혹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7.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가. 심리·정서적 상담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청소년 위기 상담전화	전국 국번 없이 1388	http://club1388.kyci.or.kr	24시간 운영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전화 02-730-2000	http://kyci.or.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cyber1388.kr	채팅, 이메일 상담 가능
학교폭력SOS지원단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전화상담 : 1588-9128 위기지원(현장출동) : 070-7165-1071, 070-7165-1079	www.jikim.net	전화, 온라인상담 가능

나. 법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1) 117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 이용 내용 : 무료 법률상담
   - 홈페이지 : http://www.117.go.kr
   - 콜센터 : 117

2) 대한법률구조 공단
   - 이용 내용 : 무료 법률상담
   -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main.jsp
   - 콜센터 132

3) 법제처
   - 이용 내용 : 현행 법령 검색 및 출력 가능
   - 홈페이지 : http://www.law.go.kr/main.html

부 록

〈부록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42호, 2011. 5.19, 일부개정] 중 일부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

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기획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문헌

오혜영외(2009). 학교폭력 : 학부모개입 지침서 5. 한국청소년상담원.
문용린외(2008).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유외숙외(2010).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교재 : 3급 청소년 발달문제. 한국청소년상담원

〈참고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main/main.do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117.go.kr